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2-08-08

의 정 부 지 방 법 원

제 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20구합14620 취득세부과처분취소
원 고	A
피 고	[redacted]시장
변 론 종 결	2022. 4. 26.
판 결 선 고	2022. 6. 14.

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가 2019. 3. 12. 원고에게 한 취득세 1,068,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.

이 유

1. 처분의 경위

가. 원고는 2019. 2. 13. 주식회사 B로부터 (차량번호 1 생략) 승합자동차(그랜드스타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2-08-08

렉스, 이하 '이 사건 자동차'라 한다)를 3,950,000원에 매수한 후, 다음날인 2019. 2. 14. 위 매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피고에게 구 지방세법(2019. 12. 31.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같다) 제20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신고를 하였다.

나. 원고는 2019. 3. 11. 이 사건 자동차를 C에게 15,000,000원에 매도하였다.

다. 피고는 2019. 3. 12. 이 사건 자동차의 시가표준액 17,646,000원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1,068,680원을 부과·고지하였다(이하 '이 사건 처분'이라 한다).

라. 원고는 2019. 4. 5.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, 2019. 7. 10. 이의신청이 기각되자, 2019. 10. 4.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, 2020. 6. 23.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으며(다만 피고가 감액사유가 있음을 인정하여 아래와 같은 경정처분을 할 것을 전제로 판단하였다), 그 결정문은 2020. 6. 25. 원고에게 송달되었다.

마. 피고는 2020. 6. 23.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자동차의 시가표준액에서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 257,400원을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처분을 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호증,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 주장의 요지

이 사건 자동차는 원고가 취득하기 이전 교통사고로 폐차에 가까운 상태가 되었고,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, 구 지방세법 시행령(2021. 12. 31.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8조 제3항 제2호 단서 괄호 부분에 의하여 중고자동차가 교통사고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 이하로 하락한 경우에는 법인장부가액(실제취득가액)을 적용하여야 함에도, 피고가 시가표준액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 법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2-08-08

령에 위반되어 위법하다.

3.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

지방세기본법 제98조 제4항 본문은 '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이 법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'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세 과세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으나, 위 법 부칙 <제16854호, 2019. 12. 31.>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위 조항은 '2021. 1. 1.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'에 비로소 적용되므로, 그 이전인 2020. 9. 25.에 제기된 이 사건 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. 따라서 이 사건 소에 적용될 제소기간에 관하여는 이 사건 처분이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'행정청의 처분'에 해당하는 이상 행정소송법 및 지방세기본법의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.

살피건대,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, 제20조 제1항,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, 제90조, 제91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, 지방세법상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그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, 이의신청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,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을 청구하고 그 조세심판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(대법원 2001. 9. 18. 선고 2000두2662 판결, 대법원 2011. 11. 24. 선고 2011두18786 판결 등 참조).

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을 모두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2-08-08

하였고, 원고가 조세심판의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은 2020. 6. 25.이다.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20. 9. 23.까지 제기되어야 함에도 이를 도과한 이후인 2020. 9. 25.에야 비로소 제기되었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[redacted]

판사 [redacted]

판사 [redacted]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2-08-08

[별지]

관계 법령

▣ 구 지방세법(2019. 12. 31.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
제10조(과세표준)

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. (단서 생략)

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. 다만,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.

⑤ 다음 각 호의 취득(증여·기부, 그 밖의 무상취득 및 「소득세법」 제101조 제1항 또는 「법인세법」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)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.

3. 판결문·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,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▣ 구 지방세법 시행령(2021. 12. 31.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
제18조(취득가격의 범위 등)

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
2. 법인장부: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·보조장·출납전표·결산서. 다만,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(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, 화재,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)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.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2-08-08

▣ 지방세기본법

제98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

③ 제89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「행정소송법」 제18조 제1항 본문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. 다만,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(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「국세기본법」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을 말한다)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제3항 본문에 따른 행정소송은 「행정소송법」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「국세기본법」 제65조제2항에 따른 결정기간(이하 이 조에서 "결정기간"이라 한다)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

부칙 <제16854호, 2019. 12. 31>

제11조(조세심판전치주의 도입에 관한 적용례 등)

① 제98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▣ 행정소송법

제18조(행정심판과의 관계)

①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20조(제소기간)

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2-08-08

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.

▣ 구 지방세기본법(2020. 12. 29. 법률 제17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
제89조(청구대상)

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·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.

제90조(이의신청)

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(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)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적어 특별시세·광역시세·도세[도세 중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·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·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,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(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)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]의 경우에는 시·도지사에게, 특별자치시세·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에게, 시·군·구세[도세 중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·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·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,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(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)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]의 경우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.

제91조(심판청구)

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. 끝.